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시행령에 맞추어 관내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서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로 변경함
- 나. 현행조례의 모법조항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를 동시행령 제24조의8로 변경함.(안 제2조)
- 다. 조례명에 따라 위원회명칭을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하고 구성인원을 현행 10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함과 동시에 심의·조정사항 일부를 추가하고자함.(안 제2조)
-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신분인 위원으로 인정함(안 제4조)
- 리. 도로관리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분야별 10인이상 20인이하의 소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정함.(안 제6조)
- 마. 도로관리심의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관계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필요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내의 도로가 빈번하게 중복 굴착되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내의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문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됨.